

제 호

공용윤리위원회 지정서

1. 명 칭 :

2. 소재지 :

3. 소속 의료기관 :

4. 대표자 :

위 기관을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